

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<신설 2011. 8. 4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5. 6. 22., 2020. 4. 7., 2022. 1. 18., 2023. 8. 16.>

1.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
2.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
3.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
4.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· 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
5.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
6.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 ·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
7.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
8.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1. 8. 4., 2013. 3. 23., 2020. 6. 9., 2022. 1. 18.>

⑤ 시 ·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1. 8. 4., 2020. 6. 9., 2022. 1. 18.>

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권한이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·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<개정 2011. 8. 4., 2020. 6. 9., 2022. 1. 18., 2023. 8. 16.>

제6장 벌칙

제6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1. 8. 4., 2017. 10. 24., 2020. 4. 7., 2022. 1. 18.>

1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
 2. 삭제 <2014. 1. 28.>
 3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
 4. 제16조(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
 - 4의2.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. 다만,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.
 - 4의3. 삭제 <2022. 1. 18.>
 5. 제25조제1항(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
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(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8조제1항(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
 7. 제51조제1항(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 자
-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· 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신설 2020. 4. 7.>

제6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